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을 “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중 “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소속 시장.군수, 출장소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함으로써” 를 “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.군수, 출장소장,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사무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및 법인.단체에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” 로 한다.

제2조중 제목명 “권한의 위임 사항” 을 “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항” 으로 하고 내용중 별표를 “별표1” 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는 “별표2” 와 같다.

제4조중 “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” 를 “위임.위탁된 사항은 위임.위탁받은자” 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준용) 권한의 위임.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## 민간 위탁 사무

대상 실과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보건과	나 이동진료 사업 업무	대한나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	전염병예방법 제24조 및 제48조
청소년과	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	청소년관련 법인(단체)	청소년기본법 제61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제11조 제 1항
산림과	수렵 강습 운영에 관한 사무 - 수렵강습회 개최 - 수렵강습 이수증 교부	한국야생동물협회 충청북도지회	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제15조 제1·3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
상정과	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 음 사무 -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-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- 지방기능경기대회 중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에 관한 다음 사무 -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조 사 -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 조사 - 확인 대상기기의 설치 시공 확인	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 충북지방사 무소  한국열관리시공협 회 충청북도지부	기능장려법 제11조· 제13조·제15조 및 제 22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2항, 제43조 제1·2항, 제44조 제 1항 및 제84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

#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4. 2. 24.

제안자 : 김경희의원의 5인

## 1. 수정이유

행정사무을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대상기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체간의 경쟁력을 발휘케 함과 아울러 건전하고 발전지향적인 단체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일방적인 위탁대상기관의 지정 보다는 포괄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

## 2. 수정 주요 골자

“한국청소년 총북연맹” → “청소년 관련 법인(단체)” (안 제2조②항  
“별표2”의 민간 위탁사무 중 청소년과 소관 사무의 위탁 대상기관)

##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②항 “별표2”의 민간위탁사무 중 청소년과소관 사무의 위탁 대상기관

“한국 청소년 총북연맹”을 “청소년 관련 법인(단체)”로 한다.